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2.

발 의 자 : 김정재 · 추경호 · 서일준
조지연 · 박충권 · 김승수
김성원 · 김대식 · 김장겸
김민전 · 이인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6·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선 이들을 학도병이라 함.

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이들은 포항·기계·안강·장사·다부동 등 6·25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되어 험격한 공을 세웠지만, 참전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숨겨진 영웅들임.

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학도병인 6·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(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).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) ① 학도병인 6·25전쟁 참전 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꾀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(이하 “학도의용군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학도의용군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학도의용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학도의용군회의 조직,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,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,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, 제32조의2, 제33조,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6·25참전유공자회”는 “학도의용군회”로 본다.

⑤ 학도의용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회원의 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
1. 6·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: 제2조에 따른 6·25전쟁 참전유공자
2.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: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
3. 학도의용군회의 회원: 제2조제2호라목 중 학도병인 6·25전쟁 참전유공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의 설립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준비) ①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원을 대표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설립취지
2.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

3. 사무소의 주소지
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21조(제1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3(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) ① 학도병인 6·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꾀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(이하 “학도의용군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 <u>② 학도의용군회는 법인으로 한다.</u> <u>③ 학도의용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u> <u>④ 학도의용군회의 조직,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,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,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, 제32조의2, 제33조,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6·25참전유공자회”는 “학도의용군회”로 본다.</u>

제19조(회원의 자격) 제2조에 따른 6·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·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
⑤ 학도의용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(회원의 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
1. 6·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: 제2조에 따른 6·25전쟁 참전유공자
2.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: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
3. 학도의용군회의 회원: 제2조제2호라목 중 학도병인 6·25전쟁 참전유공자